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468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2. 2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(2024. 1. 9. ~ 2024. 1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1. 개정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식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(안 제6조제1항2호)
- 나.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(안 제6조제1항3호)
- 다.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
- 나. 예산조치: 구비편성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36조 제1항 제2호”를 “제36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양곡비 및 부식비
3. 냉·난방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“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하 한다)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제36조 제1항제2호----- --.
제6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 3.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·난방비 4. ~ 8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제6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양곡비 및 부식비 3. 냉·난방비 4. ~ 8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 :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한 비용 필요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세출	부식보조금	423,500	462,000	462,000	462,000	462,000	2,271,500
	소계	423,500	462,000	462,000	462,000	462,000	2,271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시비							
구비	자체재원	423,500	462,000	462,000	462,000	462,000	2,271,500
	의존재원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423,500	462,000	462,000	462,000	462,000	2,271,500

5. 작성자 : 어르신장애인과 최현숙(2627-139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재정지원금 : 연 462,000천원
- 경로당 개소당 평균 월 50만원 기준×12개월×77개소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2. 29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20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
금천구(어르신장애인과), 02-2627-139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구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로당 운영비 지원
 2.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
 3.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
 4.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운영비
2.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
3.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·난방비

4.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

5.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

6. 설·추석 위문품 지원

7.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

8.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, 이용인원,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6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

2.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

3.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3.12.29.]

제7조(정산 등)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(운영비 및 냉·난방비 등을 말한다)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·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,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,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시설 및 회원관리, 운영비 사용·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

2.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3.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

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·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,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.

1. 수입·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

2.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

3. 그 밖에 법령,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
제9조(결연사업)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제874호, 2016.10.14.)

제1조(시행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지원·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·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3. 12. 14.] [법률 제19449호, 2023. 6. 13, 일부개정]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노인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2. 14.] [대통령령 제33901호, 2023. 12. 5, 일부개정]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4. 7. 30., 2007. 12. 13., 2011. 12. 8., 2017. 9. 5.>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6.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5. 12. 27., 2011. 10. 26.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2. 27., 2012. 8. 3.>